제 2024 - 82 호

『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』 통합 공고

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선도의 일환으로서 5대 핵심 로봇부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」의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4년 9월 20일

부천산업진흥원장

Ⅰ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

○ 사업목적 :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5대 핵심 부품의 상용화 지원

○ 사업예산 : 총 260백만원

○ 사업분야 : ① 제품화 지원 ② 시제품 제작지원

○ 사업대상 : 로봇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

□ 주요사업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예산	지원규모	비 고
제품화 지원	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지원	200백만원	4개사 내외	기업당 50백만원 내외
시제품제작 지원	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로봇부품 개발 아이디어의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	60백만원	6개사 내외	기업당 10백만원 내외
계		260백만원	10개사 내외	-

※ 1. 5대 핵심 로봇부품(감속기, 서보모터, 그리퍼, 센서, SW부품) 과제 우선 선정

2. 타 분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

3. 기술료 징수 : 비징수

4. 상기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사업 공고가 취소 및 변경·지연 될 수도 있음

Ⅱ 사업내용

1 제품화 지원

○ **지원방식** :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 과제 선정 및 지원

※ 제품화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예정

○ **사업기간**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. 1. 31.까지

※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**지원예산** : 200백만원

○ **지원규모** : 4개사 내외(총 비용의 75%이내, 최대 50백만원 한도 내)

○ **신청자격** :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,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하며, 기업단독, 기업+기업, 기업+연구소, 기업+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
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
〈 제외대상 〉

-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% 이상, 유동성 50%이하인 기업 참여불가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)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결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기업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위탁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(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[www.ntis.go.kr]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)

※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○ **지원대상**

-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

※ 소형·경량, 고기능,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, 로봇용 정밀·저속 고토크 모터, 지능형 그리퍼, 로봇용 멀티 융합센서,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, SW부품 등

-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
- 사업종료기간 내에 완성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
-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

※ 단,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기반구축 연구장비 등 [붙임1]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업만 지원

○ **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조건**

- 사업비 구성 :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민간부담금 비율 : 전체 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
  · 수행기관(주관기업/참여기업)은 민간부담금의 40% 이상 현금 부담
-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
  ※ 현금인건비 산정 불인정

○ **추진방법** : 공모방식

사업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/선정 및 협약체결	➡	사업추진	➡	중간(최종)보고 / 정산보고	➡	중간(최종)평가 / 회계감사
진흥원		기업▸진흥원		기업▸진흥원		기업		기업▸진흥원		진흥원

○ **평가방법**

- 평가항목

평 가 항 목	평 가 지 표	비 중(%)	
수행능력	■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10	60
	■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	15	
	■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	15	
	■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	10	
	■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	10	
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	■ 기술적 파급효과	10	40
	■ 실용화 가능성	10	
	■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	10	
	■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	5	
	■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	5	

- 지원대상 선정
  ·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지원과제로 선정
  ·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  ·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2 시제품 제작 지원

○ **지원분야** : 서비스로봇 부품 시제품 상용화 지원(금형, PCB 등)

○ **사업기간** : 선정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

※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**지원예산** : 60백만원

○ **지원규모** : 6개사 내외

- 기업별 총 비용의 50%이내, 최대 10백만원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○ **신청자격**

- 국내 서비스로봇 부품·부분품 생산기업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
※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〈 제외대상 〉

-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/NTIS 기준)
- 국세, 지방세 체납,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
-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

※ 해당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 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예정이오니 유의 요망

○ **지원내용**

- **(금형 제작)** 디자인 개발에 대한 워킹 목업 및 금형 제작 지원
- **(PCB 제작)** 제품 설계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PCB 제작 지원
- **(재료비)**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
  - 시제품 제작 완료가 사업기간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

○ **선정방식** : 선정평가위원회 서면심의

○ **지원방식** : 선정기업의 제작 완료 후, 지원금 지급(선지출 후정산)

○ **지원분야**

구분	지 원 내 용	지원규모	지원 업체수
시제품 제작비	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시제품 제작비 ▸ 재료비, 외주용역비, 디자인 개발, 설계, 금형비, PCB제작비 등	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	6개사 내외

○ **추진방법 : 공모방식**

사업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/선정	➡	사업추진	➡	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	➡	지원금지급
진흥원		기업▸진흥원		진흥원		기업		기업▸진흥원		기업▸진흥원

Ⅲ 추진일정 및 절차

□ 추진일정 및 절차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번호</th><th rowspan="2">추진내용</th><th colspan="6">추진일정(월)</th></tr>
<tr><td>'24.9</td><td>10</td><td>11</td><td>12</td><td>'25.1</td><td>2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1</td><td rowspan="4">제품화 지원</td><td colspan="2">사업공고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평가 및 협약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3">사업추진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최종평가 및 정산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2</td><td rowspan="4">시제품 제작 지원</td><td colspan="2">사업공고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평가 및 선정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사업추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</td></tr>
</table>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Ⅳ 신청방법 및 접수처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4. 9. 20.(금) ~ 10. 4.(금)까지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

* 부천산업진흥원(www.bizbc.or.kr) 홈페이지 사업공고 → 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」 통합 공고→ **신청하기**를 통한 사업신청

□ 신청문의

○ 담당자 : 부천산업진흥원 로봇융합팀 김주용 차장

- 문의전화 : 032-716-6502
- 이 메 일 : kjy@bizbc.or.kr
-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(부천테크노파크), 401동 1503호, 부천산업진흥원 로봇융합팀

○ 전산문의 : 부천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박승호 주임

- 문의전화 : 032-716-6757

Ⅴ 제출서류

지원분야	제출서류		접수 방법	접수기간
	개별	공통		
제품화 지원	1) 사업계획서 1부 2) 기타 첨부 -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(2021,2022,2023) 1부 -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- 민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-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※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제출	3) 공통 첨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※ 유효기간 잔여일 확인	온라인 접수	공고일 ~10.4(금)
시제품 제작 지원	1) 신청서, 사업계획서 1부 2) 기타첨부 1부 - 견적서, 회사 소개자료(카달로그) ※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제출			

Ⅵ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

○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기준, 기타 진흥원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귀속

○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(지원)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○ '현장평가' 및 '발표평가'과정에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, 1회에 한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○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(누락) 등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*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위임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
○ 선정이후 중복 및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○ 진흥원은 중간(수시)점검, 성과조사 등으로 사업을 관리하며, 점검결과에 따라 **'과제 중단 또는 지원금 회수'**될 수 있음

○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□ 기타사항

○ 접수된 계획서는 동 사업 과제로만 활용되며,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